

#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  
발 의 자 : 이병도, 김혜련, 오현정,  
김동식, 김용연, 봉양순,  
서윤기, 이영실, 이정인,  
김화숙, 김소양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·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이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.  
(안 제15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)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5조의2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</u>  <u>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</u>  <u>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</u>  <u>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</u>  <u>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</u>  <u>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</u>  <u>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</u>  <u>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</u>  <u>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</u>  <u>할 수 있다.</u></p>